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 의무화 안내

(2019. 9.,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란?

-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려고 할 때, 보육현장에 조기 적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 제4항 관련)

□ 개요

- (교육대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
※ 다만, 보육업무 미종사 기간(만 2년) 동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40시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적용 제외
- (적용시기) 2020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교육 이수 의무
- (교육시간 및 비용) 총 40시간, 8만원(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 지사가 지정한 보수교육기관
- (교육내용) 3개 교육영역(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0개 과목

영역 (3개영역)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교과목 (10과목)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복지와 인권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영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 영유아 행동지도 · 보육계획 수립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표준보육과정

- (교육신청 방법) 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chrd.childcare.go.kr>) 접속
--> 교육통합 관리 --> 교육신청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내가
다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의 전문성을 지원합니다.

내가
변화된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빠른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내가
쉬는 동안
달라진 점은
없을까?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을 알려 드립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



“'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기(2년이상)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6.12, 시행 '20.3.9)

교육 신청

'19년 9월 2일부터, <http://chrld.childcare.go.kr>

교육 비용

자부담 8만 원

교육 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사도지사 지정 보수교육기관 별도 안내 예정



·'20. 3월 예정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에 의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chrld.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은 여러분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현재 3만 9천여명의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세요~

어린이집 복귀를 준비하시는 선생님!

'19. 6.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20. 3. 1 시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 미종사자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조기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 하려고 할 때
전문성 강화와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교육은 여러분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 교육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에 수행하려는 사람

● 교육 목표 및 교육 시간

3개 교육 영역, 10개 과목, 총 40시간 구성

영역	영역별 과목
인성·소양(2)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복지와 인권
건강·안전(1)	- 영유아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7)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보육계획 수립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영유아 급식제 상호작용 - 보문보육과정 - 영유아 행동지도

● 교육 일정

'19년 9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시 교육 개설 운영,

· 시·도 보수교육기관은 '20년 이후 개설 예정

● 적용 시기

'20년 3월 1일 이후 다시 보육업무에 수행하려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교육 이수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은
3개 영역의 10개 과목으로
각 과목별로 각 4시간씩 총 40시간의 과정을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는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운영 절차

한국보육진흥원
수시 교육 일정 공지('19년 9월 중순)
·사도지사 지정 보수교육기관 별도 안내 예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 및 교육비 납부
● 교육 신청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후, 교육신청
(<http://chrld.childcare.go.kr>)

교육 기관
교육 신청 접수, 교육 시행,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실적 보고

어린이집
신규 원장·보육교사 사용자 보수교육 이수증 확인
일명보고시 교육 이수증 제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의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교육일정, 교육시행 및 이수 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